

KBU 지역사회 임팩트 연구소 운영규정

제정 : 2020. 04. 03.

산학협력단(02-950-5424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명칭)	제3조(사업)	제4조(조직)
제5조(임무)	제6조(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)	제7조(재정)	
제8조(회계연도)	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KBU 지역사회 임팩트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연구소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특성화 연구소로 KBU 지역사회 임팩트 연구소(이하 "본 연구소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회교육
2. 지역사회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과의 학술교류 사업
3.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 추진
4. 세미나, 강연회, 학술회의 등의 개최
5. 학술지, 전문도서, 연구자료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
6.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 및 사업

제4조(조직)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과 연구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연구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 연구소장과 연구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.

제5조(임무)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연구원은 연구수행 및 연구소 운영을 담당한다.

③ 사무직원 및 조교는 연구소장 및 연구원의 업무를 보좌하고 연구소 사무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본 연구소와 관련된 운영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폐
2.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
3. 연구계약 체결
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5. 지역사회 과제 및 연구 수행 및 평가
6. 학생들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 및 운영사항
7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7조(재정) ① 연구소의 운영 경비는 국비 또는 기타 본 대학교 산단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금과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